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23. . . (제 회)	

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
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총리 한덕수 (행정안전부 소관)
제출 연월일	2023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전라남도 신안군의 증가하는 치안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전라남도경찰청 소속으로 신안경찰서를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8명(총경 1명, 경정 1명, 경감 4명, 경위 1명, 경사 1명)을 증원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

3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2023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

다. 합 의 : 기획재정부 및 경찰청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 및 신·구정원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3. 0. 00. ~ 0. 00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

음

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

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2조제1항 중 “258개”를 “259개”로 한다.

제64조제2항 후단 중 “579명”을 “580명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528명”을 “529명”으로 한다.

별표 2의 전라남도경찰청의 경찰서명란 중 “구례경찰서”를 “구례경찰서, 신안경찰서”로 한다.

별표 5 중 총계 “134,199”를 “134,207”로 하고, 경찰공무원 계 “129,817”을 “129,825”로 하며, 총경 이하 “129,718”을 “129,726”으로 한다.

별표 6 제1호2)를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호 제1호9)를 삭제하며, 같은 호 10) 및 11)을 각각 9) 및 10)으로 한다.

2) 생활안전국 2개 과	7명
---------------	----

부 칙

이 영은 2023년 7월 3일부터 시행한다. 다만 별표 6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42조(경찰서) ① 시·도경찰청장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시·도경찰청장 소속으로 <u>258개</u> 경찰서의 범위에서 경찰서를 두며, 경찰서의 명칭은 별표 2와 같다.	제42조(경찰서) ① ----- ----- ----- <u>259개</u> ----- ----- -----.
②·③ (생략)	②·③ (현행과 같음)
제64조(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) ① (생략)	제64조(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) ① (현행과 같음)
② 경찰청의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. 이 경우 총경의 정원은 <u>579명</u> 을, 4급 공무원의 정원은 15명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,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(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)의 100분의 15를 그 상한으로 한다.	② ----- ----- -----. ----- <u>580명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③ 제2항 후단에 따른 총경의 정원 중 「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」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경찰청의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	③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

및 보좌기관의 정원과 경찰서장 의 정원의 합은 <u>528명</u>을 그 상 한으로 한다 ④ ~ ⑥ (생 략)	----- ----- <u>529명</u>----- ----- ④ ~ ⑥ (현행과 같음)
---	---

신 · 구 정원 대비 표

[별표 5]

경찰청 소속기관 공무원 정원표(제64조제1항 관련)

직 급 별	현 행	개정안	증 감
총 계	<u>134,199</u>	<u>134,207</u>	+8
경찰공무원 계	<u>129,817</u>	<u>129,825</u>	+8
·	·	·	
·	·	·	
총경 이하	<u>129,718</u>	<u>129,726</u>	+8
·	·	·	
·	·	·	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행정안전부 사회조직과	
연 락 처	(044) 205 - 2371